

최대한의 협의와 합의를 통한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강미영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 학예연구관

1. 서론

언어는 그 자체로 문화이며 문화를 창조하고 진흥·보존하는 수단이다. 각 나라는 자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나름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는데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언어 정책’이다. 그래서 한 국가의 언어 정책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표방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언어 정책은 국가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언어가 사회 통합과 문화 창달의 밑거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인지는 언어 정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언어 정책은 한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언어 다양성 속에서 한국어의 경쟁력을 마련하는 것을 당면 과제로 안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의 표준어 보급 정책에서 나아가 지식과 정보의 세계적 동시성과 탈국경화에 따라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해진 외래어와 외국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인터넷과 누리 소통망의 생활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지는 은어의 범람 현상으로 더욱 표면화되고 있는 세대 간, 계층 간

* 이 글은 2016~2018년 장기 국외 훈련의 결과 보고서 “다문화·다언어 사회에서의 언어 정책 연구”(2018)에서 발췌하여 작성한 것이다.

언어 분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언어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의 평화적 교류를 활성화 함에서도 언어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는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중에 첫째로 꼽는 것이 바로 외래어와 외국어 남용이다(권재일 2015). 특히 공공언어에서 어려운 전문어를 남발하고 외국어를 남용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문으로 언어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사회 분열과 침체가 재현될 우려도 있다(남영신 2015). 한편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은 각급 교육 현장에서 사실상 제도화 되고 있는바, 초·중·등 교육 현장의 영어 교육 과열은 미래 세대의 언어생활에서 한국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학마저도 영어 원어 수업을 교육 평가의 주요 근거로 삼으면서 영어 지상주의를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를 중심으로 국어사전 구축, 우리말 다듬기, 공공용어 관리 등 한국어 진흥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 정책의 결과가 국민 언어생활의 저변에 잘 밀착하도록 하는 데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자국어 보호 정책의 역사와 전통이 매우 오랜 나라 중 하나인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에 참고할 만한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2.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프랑스는 프랑스어를 보호하고 프랑스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우 강한 법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헌법(1958. 10. 4.) 개정안(1992. 6. 25.) 제2조 제1항에 “프랑스어는 프랑스공화국의 언어이다.”를 추가함으로써

헌법상에 명시적으로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사용법’(Loi n°94-665), 일명 ‘투봉법’을 제정하여 프랑스어 사용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투봉법’은 총 2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은 다음과 같이 프랑스어 사용 의무에 대한 8가지의 주요 원칙을 포함한다.

- 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위해 재화, 상품, 서비스 및 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명칭, 공급, 소개, 사용법, 보증 조건 또는 기간을 기술할 때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이다.
- ② **근로·노동 부문**에서 고용 계약, 내부 규정, 직원의 의무(예: 보건, 안전, 징계 문제 등)가 포함된 문서, 단체 노동 협약 및 회사 설립 내용이 포함된 문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취업, 구인 제의, 해고 전 면담, 단체 교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항이 포함된 문서 등에 서는 프랑스어 사용이 의무이다.
- ③ 공공 및 민영 운송 시설 관리자와 **운송** 관계자들은 프랑스 내에서 승객들에게 안전 관련 필수 정보를 제공할 때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¹⁾
- ④ 공공 및 민영 **교육 기관**에서 프랑스어로 된 교육과 시험, 선발 시험,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작성에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⑤ 라디오, 텔레비전 등 **방송 미디어 서비스**에서 프랑스어 사용 및 프랑스어 번역은 의무이다. 다만 원어 버전 영화 또는 시청각 미디어, 외국어 교육 목적의 방송, 문화 관련 행사 중계방송 등은 제외한다
- ⑥ **모든 광고**(서면, 광고, 음성 영상 기술 광고)에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1) 장비운송주택부 내 운송 부문에 투봉법을 적용하는 행정 공문(1999. 9. 28.) 등

- ⑦ 프랑스 국적의 사람이 프랑스에서 행사, 심포지엄, 학회 등 행사를 주관할 때 다음 의무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모든 프랑스어권 참가자는 프랑스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발표문서는 프랑스어 버전이 있어야 한다.
 - 참가자에게 배부하거나 행사 후 출판 문서는 최소 프랑스어 요약본을 포함해야 한다.
- ⑧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은 프랑스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프랑스와 프랑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어 사용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등 자국어 보호 정책만을 고수하기는 힘들어짐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13년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법(LOI n° 2013-660)’을 제정하여 교육법 L121-3조를 개정함으로써 일부 대학 및 학사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특정 조건이란 교육법 L121-3조 II에서 밝힌 대로 외국 언어·문화 교육이 필요할 때 외국인 초빙 교수의 강의나 국외 및 국제 교육 기관 간 협약에 따른 교육 및 다언어·다국적 과정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강의를 말한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외국어로 강의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은 지켜야 한다.

- ① 외국어를 사용한 교육 즉 프랑스어 사용의 예외가 적용된 과정은 필요불가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외국어 수업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외국어 사용은 안 되며 일부만 외국어로 강의할 수 있다.
- ③ 외국어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프랑스어 능력이 충분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프랑스어 수업을 받게 하며, 이를 통한 프랑스어 국외 보급을 촉진한다.

이 원칙들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는 외국어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프랑스어 능력도 함양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한편, 방송 매체 등을 통한 광고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대중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방송 미디어에서의 프랑스어 사용을 관리하는 광고 전문 규제 기관(ARPP)이 공정한 광고 배포를 위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이 기관은 광고 배포 전후에 광고 표현을 다음의 기준으로 점검함으로써 정확한 프랑스어 사용을 평가하고 있다.

〈광고 표현 점검 기준〉

-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외국어 광고는 프랑스어 버전 설명을 동반해야 한다.
- 프랑스어 버전은 외국어 버전에서만 시청각적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나 프랑스어-외국어 광고 버전 사이의 유사성이나 병렬 양식은 필요 없다.
- 외국어 광고 원본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할 필요는 없다.

세계화에 직면하여 프랑스에서는 각종 문화, 과학, 기술과 관련한 국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프랑스어권 사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영어로만 진행되는 행사가 많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어로 진행되는 행사는 프랑스어 요약본을 포함하게 하는 등 프랑스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 프랑스어 사용은 의무이다. 프랑스 총리 행정 공문(13.

4. 25.)에서는 국민에게 동등한 지식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프랑스어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 공문(Circulaire NOR: PRMX1311783C)에서 발췌
(생략) 공공 부문의 프랑스어 사용은 국민에게 동등한 정보와 지식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생략)

특히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²⁾를 거쳐 공보에 게재된 용어는 시행령(Décret n°96-602) 제11조에 따라 모든 공공 서비스에서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부문 종사자가 작성하는 계약서 등 문서는 프랑스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프랑스 내에서 공공 기관이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할 때 번역 또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대체할 프랑스어가 있음에도 외국어 표현을 사용함은 금지되어 있다. 끝으로 외국어로 작성된 홍보 문서를 배포할 때에는 적어도 프랑스어 요약본을 포함해야 한다.

3. 프랑스 언어 정책 중심 기관

프랑스 언어 정책은 주로 문화소통부, 교육부, 외무부에서 소관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부처를 포함해 재정부, 노동부, 법무부 등 범정부 부처와 유럽 연합, 프랑스어권 국제기구와 프랑스 표준 협회, 공영 방송사 등 관련 기관들 사이에서 프랑스의 언어 정책 관련 사항을 조율하고 프랑스 정부의 연간 언어 정책 활동 보고서인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국회보고서”³⁾ 작성을 담당하는 등 언어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는 기관은

2)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3) '투봉법' 제22조에 따라 매년 9월 15일 이전에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문화소통부 소속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이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무엇보다도 먼저 프랑스어 사용법인 ‘투법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프랑스어 풍부화 시행령(1996년 제정, 2015년 개정)의 시행과 언어 사용 규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와 함께 전문가 집단(이전의 전문용어 및 신어 위원회)과 프랑스 한림원의 전문용어 목록 개발을 총괄한다. 이러한 방향은 이 기관이 진정한 문화소통부의 소속 기관이 된 2009년의 ‘조직의 임무와 운영에 관한 문화소통부 행정 명령’(Arrêté du 17 novembre 2009, NOR: MCCB0922703A)에서 명문화된다.

이 기관 내 부서 조정 과정도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조직을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언어와 디지털’ 부서의 신설과 더불어 부서 명칭 변경(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프랑스어 진흥과 풍부화)이 관찰된다. 현재의 프랑스어 진흥과 풍부화 부서명은 ‘2009년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문화소통부 행정 명령(Arrêté du 17 novembre 2009)’에 규정된 업무 중 ‘프랑스 풍부화’ 업무가 부서 명칭으로 구체화하면서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조직도(2018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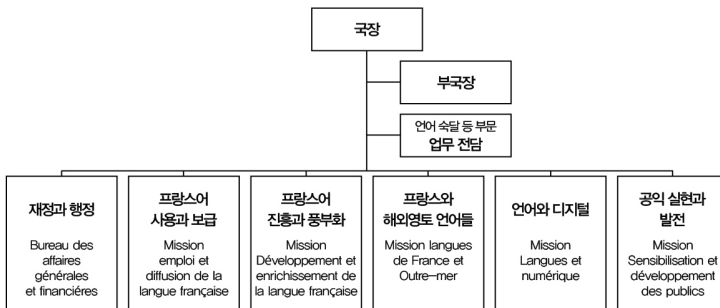


표 1 2010년과 2018년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조직도 비교
(변경 부서 중심)

2010년 ⁴⁾		2018년 현재
언어 능력과 교육		언어 숙달 부문 업무 전담
프랑스어 진흥과 현대화	⇒	프랑스어 진흥과 풍부화 (‘15년~)
프랑스의 언어들		프랑스와 해외 영토 언어들
-		언어와 디지털 (‘11년~)

4. 민관 협동 프랑스어 사용 보호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프랑스어 사용법’ 관리 업무와 관련 하여, 소비 유통 구조에서 프랑스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소비·사기·독점 문제 담당국(DGCCRF)과 프랑스 광고 관리 업무에서 프랑스어 관련 사항을 함께 다루는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ARPP)가 함께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영역을 점검 하면서 ‘투봉법’ 관련 사항도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 적발 시 경고 또는 소송과 같이 두 가지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소송의 경우는 프랑스어 보호 협회가 맡아 진행한다.

프랑스어 보호 협회들은 ‘투봉법’ 제19조에 따라 법무부와 문화소통부의 승인을 받은 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투봉법’ 조항 관련 침해 사항에 대해 형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상품,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상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2조) 침해

4) 2010년 조직도는 《새국어생활》 21권 4호 출장 보고 참고

- 공공 도로, 대중교통 수단, 공개된 장소의 공지 사항 등 정보상의 프랑스어 사용(제3조~제4조) 침해
- 프랑스에서 조직된 학회 등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6조) 침해
- 공공 기관이 프랑스에서 배포한 간행물, 잡지 및 통신문상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7조) 침해
- 구인 광고상의 프랑스어 사용(투봉법 제10조) 침해

투봉법 제19조 : “형사소송법 (제2-14 (V)조) 신설”

국무회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승인된 …… 프랑스어를 보호하겠다고 제안하는 모든 협회들은 투봉법(loi n° 94-665)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10조의 조항의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 재판 청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어 방위(DLF), 프랑스어의 미래(ALF), 프랑스어권 우호 연계 협회(AFAL), 프랑스어권 비즈니스 포럼의 프랑스 위원회(FFA) 등 협회 4개가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들은 프랑스어 사용 현황을 감시하고 홍보하는 기본 역할과 더불어 소송 제기 가능 자격 때문에 소비·사기·독점 문제 담당국,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 등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스어 사용 점검 관리는 매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우선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의 수시 점검 활동(16. 3. 1.~17. 4. 30.) 내용을 보면 총 15,705건 중 1,080건으로 전체 점검 수의 약 6.9%가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한 것이었다.

표 2 2016. 3. 1.~2017. 4. 30. 광고 수시 점검

유형	점검 횟수
텔레비전 광고	10,796
신문 광고	1,372
벽보 광고	931
인터넷 광고	1,059
라디오 광고	377
기타 매개체를 이용한 광고	1,170
총계	15,705
프랑스어 사용 관련 점검 건수	1,080

같은 기간에 진행된 텔레비전과 주문형 시청각 매체의 광고 21,665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전 점검은 점검 대상 중 19,776건이 통과하고, 1,888건이 다양한 법률, 규정 등에 따라 수정 요청 대상이 되었다. 그중 ‘투봉법’ 조항과 관련한 수정 요청은 279건이었는데 번역 요청을 한 외국 용어는 대부분 영어였으며, 프랑스 광고 규제 위원회는 이러한 외국어 표현에 대해 프랑스어 번역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활동 외에도 오탈자와 문법 오류와 관련한 수정 요청도 하고 있다. 끝으로 이 위원회는 ‘상표’에 등록된 외국어 표현에 대한 번역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소비·사기·독점 문제 담당국의 프랑스어 사용과 관련한 점검 활동을 보면,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2016년에만 7,234건에 대해 개입했다. 이는 2015년 7,176건에 비해 조금은 증가한 것이다. 위법 적발은 2015년 전체 점검 건수 7,176건 중 956건으로 13.2%의 적발률을 보이는 가운데 2016년은 12.4%로 감소한다. 한편 소송 비율은 2015년에 위법 사례 중 8.2%가 소송으로 이어진 데 비해 2016년은 적발된 위법 사례 896건 중 11.8%에 해당하는 10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 외 가벼운 위법 사례

790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표 3>에서 보면 점검 중 위법 사례를 발견한다 하여도 후속 조치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경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점검 중 위법 사례를 발견한다 하여도 후속 조치는 대부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경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3 연도별 프랑스어 사용 점검 및 위법 사례 적발 건수 변화⁵⁾

연도	점검 횟수	위법 사례 수 (점검 대비 위법 적발률)	후속 조치		최종 결정 수
			경고 수	검찰 송치 수 (송치율)	
2006	10,923	804(7.4%)	412	131(31.8%)	59
2007	12,069	1,106(9.2%)	487	136(27.9%)	43
2008	11,248	1,146(10.2%)	503	113(22.5%)	31
2009	9,309	1,155(12.4%)	579	95(16.4%)	30
2010	11,483	1,648(14.4%)	806	141(17.5%)	31
2011	12,848	1,421(11.1%)	676	123(18.2%)	26
2012	8,423	1,183(14.0%)	1,076	107(9.9%)	29
2013	8,475	1,038(12.2%)	931	107(11.5%)	20
2014	7,000	988(14.1%)	904	84(9.3%)	27
2015	7,176	946(13.2%)	868	78(9.0%)	23
2016	7,234	896(12.4%)	790	106(13.4%)	24

한편 11년간의 점검 활동을 통틀어서 보면 검찰 송치율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20~30% 전후를 보이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10% 전후를 보인다. 그만큼 경고를 통해 자발적인 프랑스어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협회의 활동은 위법 적발 건수들에 대해 대부분은 소송까지 가지는 않고 편지 등

5)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2017)을 참고하여 보완

권고로 프랑스어 사용을 이끄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그 하나의 예로 콩코르드 광장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프랑스어 광고를 들 수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의 2017년 결산 보고서⁶⁾를 보면 삼성 ‘갤럭시 S8’의 광고를 예시로 들면서 “신기술도 프랑스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내에서도 스마트폰 등 신기술 제품이 프랑스에서 광고될 때 <그림 2> ‘갤럭시 노트8’ 광고처럼 영어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으나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표현될 수 있도록 민간 협회의 감시 활동이 활발하다. ‘갤럭시 S8’ 프랑스어 광고는 콩코르드 광장 벽면 광고 게시 초기에는 영어로 표현되어 있었으나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이 프랑스어 보호 협회와의 협력으로 프랑스어 번역을 권유하고 삼성이 이를 수용하여 수정된 것이다.

그림 2 파리 콩코르드 광장의 삼성 광고판



‘삼성 갤럭시 노트8’ 영어 광고판
(‘17. 10.)⁷⁾



‘삼성 갤럭시 S8’ 프랑스어 광고판
(‘17. 11.)⁸⁾

6)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2017) 위 보고서

7) 그림 출처: <https://www.gettyimages.co.uk>

8) 그림 출처: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2017) 위 보고서

5. 프랑스어 풍부화 정책

언어는 소통의 수단이므로 언어 사용자가 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표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 기술에 의해 지배되는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려면 매년 생겨나는 수천의 새로운 실체 및 개념을 이해하고 지칭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시행령(Décret n°96-602) 제정에 따라 1996년 총리 직속으로 **전문용어와 신어 일반위원회**(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 et de néologie)를 설치하고⁹⁾ 각 부처 내에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반 대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어를 소수 전문가 집단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과학 기술 관련 개념 및 대상을 지칭하는 프랑스어 용어를 생성하고 배포하며 장려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고 이후 시행령(Décret n°96-602) 개정(Décret n°2015-341)에 따라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프랑스어 풍부화’란 용어는 법조문에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1972년 프랑스어 풍부화에 관한 시행령(Décret n°72-19)의 제목에서 먼저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조직명으로까지 자리 잡게 된 것을 통해 정부가 신어 정책을 추진할 때 통제를 통한 프랑스어 보호에서 나아가 풍부화를 통한 용어 추천으로 자발적인 프랑스어 사용을 유도하고자 한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5.1.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의 구성과 운영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는 국민의 프랑스어 어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dispositif de l'enrichissement)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는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과 프랑스

9) 전문용어와 신어 일반위원회의 초기 형태인 ‘전문용어 일반위원회(commission générale de terminologie)’가 시행령(Décret n° 86-439)에 따라 설치된 바 있다.

한림원,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 프랑스어 동맹국의 언어 정책 책임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학 연구실의 데이터베이스 지원 체계, 표준 협회, 유럽위원회 번역 관리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의 중심은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에 의해 임명된 위원장과 프랑스 한림원 소속의 종신 위원 6명과 문화부 추천 위원 12명 등 총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4년이다. 2017년 11월 이후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매월 1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간사 기관은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으로 매년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의 연간 보고서를 '프랑스어 사용에 대한 국회보고서'의 부록으로 붙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의 임무는 프랑스어 풍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용어 보급을 개선하며, 다언어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새로운 용어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는 검토 회의당 평균 50개 용어를 검토하여 연간 약 300여 개의 용어와 그 용어에 대한 뜻풀이를 결정하여 추천하고 있다.¹⁰⁾

한편, <그림 3>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총 10명의 고위공무원이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에 참여하는 각 단위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해당 부처 소관의 전문가 집단을 이끄는 등 프랑스어 사용 촉진 정책을 이끌고 있다. 현재 19개 전문가 집단이 14개 부처 내에¹¹⁾ 구성돼 있는데 각 전문가 집단에는 20~30명의 전문가들¹²⁾이 자원봉사하며 총 300여 명에 이른다. 이 전문가 집단은 2015년 이전에는 장관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

10) 2015년에는 14개 분야의 268개 용어와 긴급 검토 용어 2개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16년에는 9개 분야의 221개 용어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11) 프랑스 용어 시스템에 모든 과학 기술 분야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나 프랑스 정부 부처 담당 영역과 관계된 용어 위원회에 관계된 분야만 포함하고 있다. 만약 한 용어가 여러 정부 부처 담당 영역과 관계가 된다면 '모든 분야' 항목에 분류된다. 프랑스 용어 시스템은 2018년 현재 82개 분야의 용어가 포함돼 있다.

12) 회사 및 협회 대표, 전문 기자, 언어학자, 전문용어 학자, 번역자 등 언어 전문가, 행정 서비스 대표자 등

되어 운영되던 것에서 2015년 시행령(Décret n°2015-341) 제6조 개정에 따라 이후 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구조가 정비되면서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되었으며, 다양한 기술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했다.

5.2.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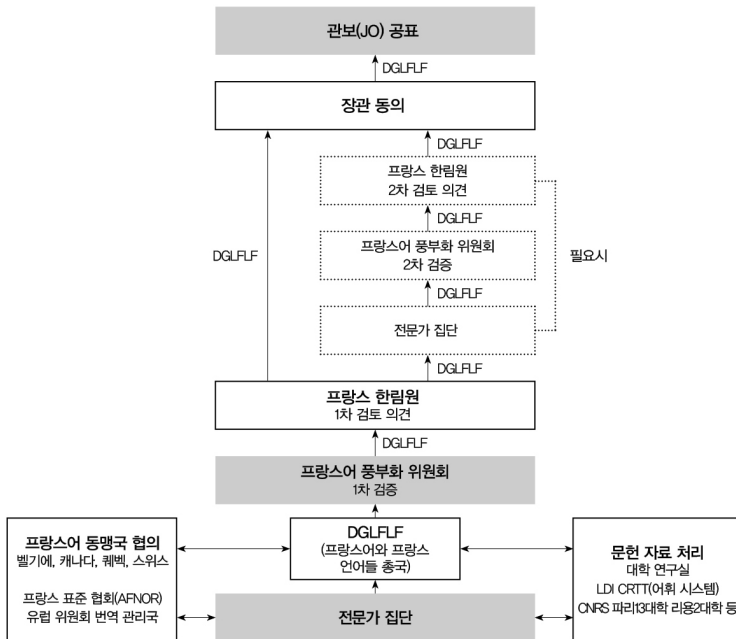
프랑스어 풍부화 체계 내의 작업 절차를 보면 우선 문헌 자료 처리를 담당하는 연구실이 말뭉치에서 신어 후보 목록을 추천하고, 이어서 각 부처 소관별 전문가 집단이 검토하게 된다(두 전문가 집단이 검토할 수도 있음). 검토가 완료된 목록에 대해서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가 1차 검증을 하게 된다. **검증 대상인 모든 외래어 용어는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위원회는 각 개념을 최대한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뜻풀이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 풍부화 위원회의 용어 선정 3대 원칙이다.

- ① 주어진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어를 선정한다.
- ② 지칭 대상인 현실 또는 개념에 명확하게 연결되는 용어를 선정한다.
- ③ 프랑스어 단어 형성 규칙에 적합한 용어를 선정한다.

이처럼 검증이 완료된 자료에 대해 프랑스 한림원이 찬성 의견을 내면 관계 부처에 다시 의견 조회를 한 후 장관 동의를 거쳐 관보에 게시된다. 해당 부처가 관보 게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프랑스 풍부화 위원회에 이유를 밝혀야 한다[시행령(Décret n°96-602) 제9조 참고]. 한편, 프랑스 한림원에서 반대하면 다시 전문가 집단과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가

1차 때와 같은 절차를 거쳐 2차 검증을 하게 된다. 프랑스어 풍부화 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의 신어 감지와 전문용어 구축을 위한 전 작업 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의와 합의를 추구**하는 강력한 원칙을 고수한다. 이는 제한된 수의 전문가 집단 내에서 만장일치에 실패한다면 해당 용어가 대중의 언어생활에 뿌리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이다. 한편 전문가 집단이나 부처 등에서 긴급 처리되어 프랑스 한림원의 검증을 바로 받아 관보에 게시될 수 있는 용어들도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긴급 검증 절차를 거치는 만큼 한정된 수의 용어만 이에 포함된다.

그림 3 프랑스 풍부화 작업 절차



5.3. 프랑스어 풍부화 사용자 참여

한편, 이 풍부화 체계에는 인터넷 창구(wikilf.culture.fr)와 사용자 의견 제안 창구(culture.fr/franceterme/boiteidees)도 설치되어 있어서 일반 사용자도 신어 후보를 제안하고 용어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에 이 시스템을 통해 230개의 용어가 접수되었고 그중 160개가 전문가 집단에 전달되어 검토되었다. 사용자들이 제안한 용어들은 풍부화 체계 내의 전문가 집단이 다루고 있는 용어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 분야는 경제 및 회계(16년, 35개 용어)와 정보(27개 용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그중 14개 용어가 2016년 말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7년 말에는 13개 용어가 관보에 게재되었으니 매년 5% 정도가 사용자 참여에 의한 결과로서 민, 관, 학이 협력하여 프랑스어 풍부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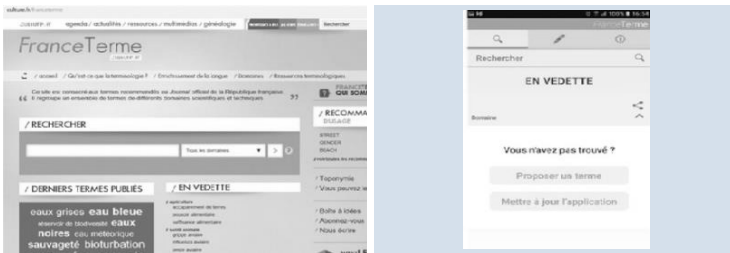
표 4 사용자 제안 용어 중 관보에 게시된 용어 예

	프랑스어(관보 게재)	영어(외래어)	의미
2016	<i>assurance au kilomètre</i>	<i>pay-as-you-drive,</i> <i>PAYD</i>	주행 거리별 보험
	<i>camion de restauration,</i> <i>camion restaurant</i>	<i>food truck</i>	식당 차
2017	<i>inhabileté numérique</i>	<i>computer illiteracy,</i> <i>digital illiteracy,</i> <i>information illiteracy</i>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 (컴맹)
	<i>internet clandestin</i>	<i>dark net,</i> <i>darknet</i>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파일을 불법 공유하는 네트워크나 기기들의 집합 (다크넷)

5.4. 프랑스어 용어 사용 촉진 및 후속 관리

프랑스 풍부화 체계에 의해 구축되고 프랑스 관보(JO: Journal Officiel)에 발표된 용어는 2017년 760여 개에 달했다. 프랑스 정부와 공공 기관 종사자들은 이 용어를 의무로 사용해야 하며, 번역사와 과학 기술 분야의 신개념 용어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 및 용어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는 프랑스어 용어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에서는 작업이 완료된 프랑스 용어 데이터베이스 검색 시스템(FranceTerm)을 웹과 휴대용 전자 기기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자를 위해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등의 홍보 자료 배포를 통해 용어 사용 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 4 프랑스 용어 검색 시스템



웹 프랑스 용어(www.culture.fr/franceterme)

모바일 프랑스 용어

그러나 신어 개발이나 보급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미래 언어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랑스어 풍부화 작업의 효과는 단순한 통계적 측정으로도 일부 파악할 수 있지만, 신어들이 프랑스 언중의 언어생활 속에 추천한 공식적 표현과 의미로 얼마나 잘 뿌리내렸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더욱 정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은 신어를 감지하고 추적하고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감시자들(Veilleurs)’ 연구 사업을 시작했다. 이 연구 사업에는 프랑스 국립 도서관(BNF)의 전자 서적 납본 담당 부서, 대학의 자연어 처리 연구실¹³⁾, 카탈루냐 용어 센터(TERMCAT)가 참여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 2010년 말부터 2016년까지 전자 납본된 신문사 누리집을 이 연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검색 시스템들(Neovelle1, Logoscope, Obneo, Morfetik)의 기능을 개선·보완·연계하여 의미론적 신어 탐지, 신어 자동 추적 및 확산의 측정에 활용하고 있다.

6. 결론

프랑스어는 헌법상에서 프랑스 국어로 인정되며, ‘프랑스어 사용법’이 제정돼 이를 위반할 때 형사 소송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는 등 프랑스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 제도 기반이 구축되어 있고, 자국어인 프랑스어 보호를 위해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프랑스어 사용법 위반 사례의 적발 시 소송을 통한 통제보다는 경고, 경고보다는 권유를 통해 사용자의 자발적인 프랑스어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불어, 외국어에 대응하는 프랑스어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신어 정책도 통제가 아니라 어휘 자원의 풍부화와 추천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민, 관, 학과 대내외적 관계 기관 연계로 구성된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에 따라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신어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언어 사용 주체인 국민의 참여율을 최대한 높이고 학계의 연구 결과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어 풍부화 절차에서 추천할 용어 개발 작업은 최대한의 협의와

13) 프랑스 리옹 2 대학, 스트라스부르 대학, 파리 13 대학, 바르셀로나 폼페우 파브라 대학

합의 원칙에 기반을 둬으로써 개발된 용어의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따지기에는 정책 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언어 정책의 성공은 사용자의 적극적인 언어 수용과 사용으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정책 기관의 일방적 보급으로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는 신어 정책에서 안정적으로 신어가 사용될 수 있도록 신어의 파급도를 측정하고 미래의 언어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프랑스어 진흥을 위한 장치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강제 기관에서 협의 및 조정 기관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의와 조정 과정은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고 언어생활에 대한 현황 조사 기능 역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 설계와 수립에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권재일(2015), “남북한 어휘 단일화”, 《새국어생활》 25-4, 국립국어원, 107-124쪽.
- 남영신(2015), “국어문화원 제도와 공공 언어” 《새국어생활》 25-3, 국립국어원, 53-75쪽.
- 프랑스 법률 검색 종합 포털: <https://www.legifrance.gouv.fr>
- 프랑스 용어(FranceTerme) 누리집: <http://www.culture.fr/franceterme>
- 프랑스어와 프랑스 언어들 총국(DGLFLF) 공식 누리집(<http://www.culturecommunication.gouv.fr/Politiques-ministerielles/Langue-francaise-et-langues-de-France>)
-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2016), “Rapport annuel de la Commission d'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2016)”
- DGLFLF(2014), “Référence 2014: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le cadre légal”
- DGLFLF(2015), “Langue française: une loi, pourquoi faire ?” Acte de la journée d'étude du 13 octobre 2014
- DGLFLF(2016 b), “Références 2016 : L'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 DGLFLF(2016 c), “Rapport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2016”
- DGLFLF(2017), “Rapport au parlement sur l'emploi de la langue française, 2017”
- DGLFLF(2018), “Bilan 17”

